



##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 약칭: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)

[시행 2025. 10. 31.] [국토교통부령 제1531호, 2025. 10. 31., 타법개정]

국토교통부 (첨단물류과) 044-201-4007, 4008

### 제1장 총칙 <신설 2022. 8. 24.>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1조의2 삭제 <2013. 3. 23.>

**제2조(물류단지 시설 등)** ①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제2조제2항제6호에서 "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3.>

1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사업장

2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6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경매장

② 영 제2조제3항제5호에서 "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조 · 가공시설"이란 「양곡관리법」 제22조제2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등이 설치하는 미곡의 건조 · 보관 · 가공시설을 말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3.>

③ 영 제2조제4항제3호에서 "그 밖에 물류단지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 단독주택 · 공동주택 · 숙박시설 · 운동시설 · 위락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3.>

### 제2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<신설 2022. 8. 24.>

**제3조(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)** 영 제3조제3항제3호에서 "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물류시설 개발종합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에 관한 대비표를 말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3.>

###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<신설 2022. 8. 24.>

**제4조(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)**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를 확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8. 4., 2012. 2. 15., 2012. 11. 29., 2013. 3. 23.>

1.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

2. 복합물류터미널의 부지 및 설비의 배치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

3. 신청인(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)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

가. 「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」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: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(Apostille)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

나. 「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」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: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

4. 신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**제5조(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)**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 [<개정 2012. 11. 29., 2013. 3. 23.>](#)

**제6조(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변경등록)** 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[<개정 2012. 11. 29., 2013. 3. 23., 2016. 12. 30.>](#)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체없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 12. 30.>

**제7조(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의 신청)**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사업의 목적 및 개요

2. 위치도

3. 연차별 투자계획

4.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설치계획

5. 기반시설(구거를 포함한다)의 설치계획

6. 조감도 및 시설배치도

7.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

8.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,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, 광업권·어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(이하 "토지등"이라 한다. 이하 같다)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소유자 및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

**제8조(물류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의 신청)**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변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변경인가신청서에는 공사계획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와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.

③ 영 제5조제2항제4호에서 "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 주차장, 상수도, 하수도, 유수지, 운하, 부두, 오·폐수시설 및 공동구를 말한다. [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3.>](#)

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변경인가신청의 내용이 제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자체없이 인가를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 12. 30.>

**제9조(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)**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. [<개정 2024. 11. 13.>](#)

**제10조(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 및 변경인가의 고시)**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사시행인가를 한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 [<개정 2012. 11. 29., 2013. 3. 23., 2016. 12. 30., 2024. 11. 13.>](#)

1. 사업의 명칭

2.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(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·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)

3. 물류터미널의 종류

4.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
5. 사업시행기간(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)
6.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소유자 및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
 

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사시행의 변경인가를 한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 [<개정 2012. 11. 29., 2013. 3. 23., 2024. 11. 13.>](#)

  1. 사업의 명칭
  2.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(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·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)
  3. 변경인가의 사유 및 내용

**제11조(사업승계의 신고)**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·양수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양도·양수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를,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를 그 권리·의무의 승계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[<개정 2012. 11. 29., 2013. 3. 23., 2015. 8. 6.>](#)

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(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야 한다. [<개정 2012. 11. 29.>](#)

1. 사업의 양도·양수신고의 경우
  - 가. 양도·양수계약서의 사본
  - 나. 양수인(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)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4조제3호의 서류
  - 다. 양수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2. 법인의 합병신고의 경우
  - 가. 합병계약서의 사본
  - 나.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 이내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명세서
  - 다.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4조제3호의 서류
  - 라.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. [<개정 2010. 8. 4., 2012. 11. 29., 2013. 3. 23.>](#)

1. 사업의 양도·양수신고의 경우 :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2. 법인의 합병신고의 경우 :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

**제12조(사업의 휴업·폐업 등 신고)** ① 법 제15조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·폐업신고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휴업·폐업 또는 해산신고서를 휴업·폐업 또는 해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[<개정 2012. 11. 29., 2013. 3. 23.>](#)

② 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해산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사업을 폐업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
2.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

**제13조(행정처분의 기준)**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#### 제4장 물류창고업 [<신설 2022. 8. 24.>](#)

**제13조의2(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준)** ①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(이하 "스마트물류센터인증"이라 한다)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[<개정 2025. 4. 1.>](#)

1. 입고 · 보관 · 분류 등 물류처리 기능영역의 첨단화 · 자동화 수준이 우수할 것
2. 시설의 구조적 성능, 참고관리 시스템 등 기반영역의 효율성 · 안전성 · 친환경성 수준이 우수할 것
- ②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의 등급은 5등급으로 구분한다. [<개정 2025. 4. 1.>](#)
- ③ 제2항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의 등급별 세부 인증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[<개정 2025. 4. 1.>](#)

[본조신설 2020. 12. 23.]

**제13조의3(스마트물류센터인증 절차 및 방법)** ① 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는자는 「건축법」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물류창고에 대하여 법 제21조의4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(이하 "인증기관"이라 한다)의 장에게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. [<개정 2025. 4. 1.>](#)

② 제1항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6서식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서류가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 등을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[<개정 2025. 4. 1.>](#)

1. 제13조의2제1항의 인증기준에 따른 자체평가서 및 그 증명자료
2. 물류센터 설계도면 및 입고 · 보관 · 분류 등 물류처리 분야별 설계설명서
3. 설계 변경 확인서(제2호의 설계도면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)
4. 도입 설비 및 장비 명세서
5. 물류센터 운영 매뉴얼
6. 품질 · 안전 · 환경관리 매뉴얼(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)
7. 물류정보시스템 기술서 및 물류센터 업무와 시스템 간 연계기술서
8. 별지 제8호의9서식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서 사본(제13조의5에 따른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)
9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
10. 그 밖에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

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으면서 서류심사를 실시하고, 제13조의7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 전문인력 중에서 5명 이내의 사람으로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서류심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실사를 실시하게 해야 한다. [<개정 2025. 4. 1.>](#)

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인증 여부 및 등급을 결정하고,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,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의7서식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. [<개정 2025. 4. 1.>](#)

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거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제13조의2제1항의 인증기준에 따른 심사 내용 및 점수, 인증 여부 및 등급이 포함된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[<개정 2025. 4. 1.>](#)

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스마트물류센터인증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 [<신설 2025. 4. 1.>](#)

⑦ 신청인은 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심사의 신청인은 재심사에 필요한 비용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. [<개정 2025. 4. 1.>](#)

⑧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작성 및 제7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[<개정 2025. 4. 1.>](#)

[본조신설 2020. 12. 23.]

[제목개정 2025. 4. 1.]

**제13조의4(인증마크의 사용 등)** ①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을 받은 자는 자신이 제작하거나 취급하는 포장 · 용기 · 홍보물 등에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(이하 "인증마크"라 한다)를 사용할 수 있다. [<개정 2025. 4. 1.>](#)

②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[본조신설 2020. 12. 23.]

**제13조의5(예비인증의 신청 등)** ① 스마트물류센터를 소유하려는 자 또는 임차하여 운영하려는 자가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스마트물류센터인증(이하 이 조에서 "본인증"이라 한다)에 앞서 건축물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(이하 "예비인증"이라 한다)을 받을 수 있다. <개정 2025. 4.

1.>

② 예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8서식의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 신청서에 제13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,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의 서류와 해당 서류가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 등을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5. 4. 1.>

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인증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8호의9서식의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 다만,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현장실사는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예비인증은 본인증을 받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. 다만,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 후 1년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한다.

⑤ 제3항에 따른 예비인증을 받은 자의 예비인증마크의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의4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예비인증을 받은 자는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본인증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.

⑥ 제3항에 따른 예비인증 받은 자는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4항 단서에 따른 예비인증의 유효기간 안에 예비인증에 맞게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.

⑦ 제2항에 따른 예비인증 첨부서류의 작성 및 예비인증에 관한 사항의 공고 및 재심사에 관하여는 제13조의3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25. 4. 1.>

[본조신설 2020. 12. 23.]

[종전 제13조의5는 제13조의10으로 이동 <2020. 12. 23.>]

**제13조의6(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)** ①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. <개정 2025. 4. 1.>

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일 것
2. 스마트물류센터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인력과 전담기구 및 업무수행체계가 적절할 것
3. 첨단물류시설 및 설비와 운영시스템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
4. 스마트물류센터인증과 관련된 교육, 컨설팅, 조사·연구 및 개발 및 홍보 등에 관한 수행능력이 있을 것
5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추고 있을 것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1개월 이상 공고해야 한다.

1. 신청 기간 및 방법

2. 지정 기준

3. 평가 방법 및 절차

4. 그 밖에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

③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8호의10서식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기구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

2.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

3.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

4. 정관(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)

5.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

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,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을 확인해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. [\[개정 2025. 4. 1.\]](#)
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의11서식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, 이를 고시해야 한다.

[[본조신설 2020. 12. 23.](#)]

[[종전 제13조의6은 제13조의11로 이동 <2020. 12. 23.>](#)]

**제13조의7(인증기관의 조직 및 운영)** ① 인증기관은 스마트물류센터인증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증운영위원회(이하 "인증운영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해야 한다. [\[개정 2025. 4. 1.\]](#)

② 인증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[\[개정 2025. 4. 1.\]](#)

③ 인증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[\[개정 2025. 4. 1.\]](#)

1.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
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증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사람

    가. 대학에서 물류 및 건축 관련 과목을 강의하는 부교수 이상인 사람

    나. 물류 및 건축 관련 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

    다. 물류 및 건축 관련 단체의 임원급 이상인 사람

    라.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

3. 인증기관 소속 전담조직의 책임자로서 인증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

④ 인증기관의 장은 성별을 고려하여 인증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5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구성해야 한다.

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대장을 작성·비치하고, 심사 원본 자료와 함께 3년간 보관해야 한다. 이 경우 인증심사대장 및 심사 원본 자료는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. [\[개정 2024. 11. 13.\]](#)

⑥ 인증기관의 장은 분기별 인증심사 실적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⑦ 제1항에서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운영위원회 및 인증심사 전문인력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[\[개정 2025. 4. 1.\]](#)

[[본조신설 2020. 12. 23.](#)]

**제13조의8(스마트물류센터인증에 대한 점검 등)** ①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의4제6항에 따라 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.

② 인증기관의 장은 스마트물류센터가 제13조의2에 따른 인증기준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스마트물류센터가 제13조의2에 따른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세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[[본조신설 2020. 12. 23.](#)]

[[제목개정 2025. 4. 1.\]](#)

**제13조의9(인증기관 지정취소 등의 기준)** 법 제21조의6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.

[본조신설 2020. 12. 23.]

**제13조의10(재정지원 대상사업)** 법 제21조의7제5호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20. 12. 23.>

1. 물류창고업의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
2. 물류창고 시설 · 장비의 효율적 개선에 관한 사항
3. 물류창고업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· 훈련
4. 물류창고업의 국제동향에 대한 조사 · 연구

[본조신설 2012. 2. 15.]

[제13조의5에서 이동 <2020. 12. 23.>]

**제13조의10(재정지원 대상사업)** 법 제21조의7제5호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20. 12. 23., 2025. 3. 28.>

1. 물류창고업의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
2. 물류창고 시설 · 장비의 효율적 개선에 관한 사항
3. 물류창고업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· 훈련
4. 물류창고업의 국제동향에 대한 조사 · 연구
5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물류창고업의 경영합리화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
[본조신설 2012. 2. 15.]

[제13조의5에서 이동 <2020. 12. 23.>]

[시행일: 2026. 3. 29.] 제13조의10

**제13조의11(준용규정)** 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 ·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사업승계 신고, 휴업 · 폐업 신고, 해산 신고(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법인만 해당한다) 및 등록취소 · 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20. 12. 23., 2022. 8. 24.>

[본조신설 2012. 2. 15.]

[제13조의6에서 이동 <2020. 12. 23.>]

## 제5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<신설 2022. 8. 24.>

**제14조(물류단지지정대장 등)**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자(이하 "물류단지지정권자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 · 비치하고 물류단지의 지정과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받은 자(이하 "시행자"라 한다) 및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6. 30., 2022. 8. 24.>

1. 별지 제9호서식의 물류단지지정대장
2. 별지 제10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대장
3. 별지 제11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

**제15조(일반물류단지 지정요청서)**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요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16. 6. 30.>

[제목개정 2016. 6. 30.]

**제15조의2(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에 대한 동의서 등)**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동의서, 동의철회서 또는 대표자지정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12호의2서식, 제12호의3서식 또는 제12호의4서식에 따른다.

[본조신설 2016. 6. 30.]

**제15조의3(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절차)** 영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[본조신설 2016. 6. 30.]

**제16조(물류단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)** 법 제22조의6제2항 후단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"이란 영 제15조제1항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6. 6. 30.>

[전문개정 2010. 8. 4.]

**제16조의2(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절차)** ① 법 제22조의7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(이하 "실수요 검증"이라 한다)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 2의3과 같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자,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및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(이하 "지정요청자 등"이라 한다)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0. 12.>

1. 지정요청자등의 사업계획서
  2. 지정요청자등의 재무제표
  3. 지정요청자등의 자금조달 확약서 또는 자금조달 계획서(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)
  4.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입주기업체 또는 해당 물류단지의 용지·시설 등을 분양·임대받으려는 자(이하 "입주기업체 등"이라 한다)의 사업참여 동의서(입주기업체 등의 물류사업의 현황 및 입주계획을 포함한다)
  5. 입주기업체 등의 재무제표
  6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실수요 검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-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7제2항에 따른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

[전문개정 2020. 12. 23.]

**제16조의3(실수요 검증 결과 통보)**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·의결을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심의결과를 물류단지 지정요청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다만, 심의결과 별표 2의3제2호 다목에 따라 물류단지 실수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평가항목별 평균점수를 알려야 한다. <개정 2016. 6. 30., 2020. 12. 23., 2021. 10. 12.>

[본조신설 2016. 6. 10.]

**제16조의4(실수요검증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)** ① 법 제22조의7제2항에 따른 실수요검증위원회(이하 "실수요검증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<개정 2016. 6. 30., 2021. 10. 12.>

1.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
2. 지정요청자등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
3.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실수요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 <개정 2017. 9. 20.>

③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(互選)한다.

④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. <개정 2017. 9. 20.>

1. 물류,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2.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⑥ 실수요검증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둔다. 이 경우 간사 및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.

[본조신설 2016. 6. 10.]

[제목개정 2016. 6. 30.]

**제16조의5(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제척 · 기피 · 회피)**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심의 · 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 ·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)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(하도급을 포함한다),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
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·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5.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(하도급을 포함한다),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

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·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검증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실수요검증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· 의결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6. 6. 10.]

**제16조의6(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해촉)**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의4제4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5. 제1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
[본조신설 2016. 6. 10.]

**제16조의7(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장의 직무)** ①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실수요검증위원회를 대표하고,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[본조신설 2016. 6. 10.]

**제16조의8(실수요검증위원회의 운영)** ① 실수요검증위원회의 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 <개정 2025. 4. 1.>

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제16조의4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6명 이상 8명 이하,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각각 선정하여 총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17. 9. 20.>

- ③ 실수요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실수요검증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⑤ 실수요검증위원회가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실수요 검증에 관하여 심의·의결하는 때에는 별표 2의3의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. <[개정 2016. 6. 30., 2017. 9. 20., 2021. 10. 12., 2022. 8. 24.](#)>
- ⑥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, 해당 사업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<[개정 2016. 6. 30., 2021. 10. 12.](#)>
- ⑦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- ⑧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[[본조신설 2016. 6. 10.](#)]

**제17조(간이공작물)** 영 제18조제3항제1호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"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. <[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3., 2019. 1. 2.](#)>

1. 비닐하우스
2. 양잠장
3. 고추, 잎담배,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
4. 버섯재배사
5. 종묘배양장
6. 퇴비장
7. 탈곡장
8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

**제18조(시행자지정신청서 등)**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.

- ②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**제19조(실시계획승인신청서)**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.

**제20조(기반시설의 설치지원)** 영 제29조제6호에서 "그 밖에 물류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 유수지 및 광장을 말한다. <[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3.](#)>

**제21조(시설부담금의 면제)** ① 시행자는 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존치시설의 소유자에 대해서 시설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.

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라목의 시설물
  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
  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0호가목 및 같은 별표 제14호가목의 시설물
  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
-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시설부담금 산정금액 및 면제사유를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. 이 경우 물류단지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[전문개정 2022. 8. 24.]

**제22조(시설부담금납부통지서)** 영 제3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.

<개정 2022. 8. 24.>

**제23조(준공인가신청서 등)** ①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.

②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필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.

③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영 제36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보 또는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6. 12. 30.>

**제24조(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)**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.

**제25조(임대요율)** 영 제40조제1호 및 제2호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"이란 100분의 3을 말한다. 다만, 시행자는 지역 여건 및 해당 물류단지시설용지 등의 분양실적 등을 고려하여 임대요율에 100분의 1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임대요율을 산정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21. 10. 12.]

**제26조(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)** 영 제4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기준 및 면적은 별표 4와 같다.

**제27조(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)** ① 영 제41조제4항제6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자(이하 이 조에서 "복합개발시행자"라 한다)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.

1. 공모는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1회이상 공고하고, 응모 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할 것
  - 가. 공모 대상 토지의 현황
  - 나. 공모참가자격 및 공모일정
  - 다. 그 밖에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2.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할 것

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, 평가기준, 선정방법, 협약서 체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3.>

**제27조의2(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기간 등)** ① 법 제50조의2제1항 본문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4년을 말한다. 다만,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는 3년으로 한다. <개정 2012. 11. 1., 2013. 3. 23., 2015. 11. 25.>

② 법 제50조의2제1항 단서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.<개정 2013. 3. 23.>

1.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 용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2.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건설공사 착수가 지연된 경우

[본조신설 2010. 8. 4.]

**제27조의3(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)** ① 법 제50조의3제1항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"이란 법 제

5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의무이행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②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「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」을 준용한다.<개정 2022. 8. 24.>

[본조신설 2010. 8. 4.]

**제28조(처분신청서 등)** ① 영 제42조제1항에 따라 분양받은 토지 · 시설 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 또는 법 제53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6. 8. 31., 2022. 1. 21.>

1. 처분사유서
  2.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그 처분을 신청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감정평가서
  3.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- ② 영 제42조제2항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45일을 말한다.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3.>

## 제6장 물류 교통 · 환경 정비사업 <신설 2022. 8. 24.>

**제29조(물류 교통 · 환경 정비지구의 지정)** 시 · 도지사는 물류 교통 · 환경 정비지구(이하 "정비지구"라 한다)를 지정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법 제59조의5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
1.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물류 교통 · 환경 정비계획(이하 "정비계획"이라 한다)
2. 그 밖에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사항

[본조신설 2020. 12. 10.]

**제29조의2(물류 교통 · 환경 정비지구지정의 해제)** 시 · 도지사는 정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했을 때에는 법 제59조의6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
1. 영 제46조의7제3항 각 호의 사항
2. 그 밖에 정비지구 해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사항

[본조신설 2020. 12. 10.]

## 제7장 보칙 <신설 2022. 8. 24.>

**제30조(증표)** 법 제61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.

**제31조(수수료)** ① 법 제63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.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·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4. 7., 2015. 8. 6.>

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<신설 2015. 8. 6.>

1. 수수료를 과오납(過誤納)한 경우: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
2. 등록 · 인가 등을 하기 전에 신청인이 해당 등록 · 인가 등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: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

## 제32조 삭제 <2010. 8. 4.>

**제33조(자본비용의 기간산정)** 영 별표 2에서 "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3.>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물류단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항만 · 도로 · 용수 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
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
3. 태풍 · 해일 · 홍수 등 불가항력적 자연재해의 발생
4. 문화재 발굴, 분묘 처리, 관련 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물류단지개발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유

**제34조(규제의 재검토)**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 <개정 2023. 7. 10.>

1. 제4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
2. 삭제 <2023. 7. 10.>
3. 삭제 <2023. 7. 10.>
4.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신청서
5. 제21조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면제
6. 삭제 <2023. 7. 10.>
7. 삭제 <2023. 7. 10.>
8. 제25조에 따른 임대요율
9.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
10. 제27조에 따른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
11. 제27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기간 등
12. 제27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
13. 삭제 <2023. 7. 10.>

[전문개정 2016. 12. 30.]

**부칙** <제1531호, 2025. 10. 31.>(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